목돈을 불리는 통장 거래신청서

통장번호 :

본 거래신청서는 '목돈을 불리는 통장'의 거래에 따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신청 외에 '목돈을 불리는 통장' 특약, '예금 거래 기본약관' 및 '자계좌의 해당예금별 거래약관'을 숭낙하고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거래인감	확 인		실명확인 (대리인 약정시)
	담 당	책임자	

㈜하나은행 _____ 지점 앞

■ 신청내용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택			
		근무처			
	연락처	□ 자택 (　　) □ 근무처 (　　) □ 이동전화 (　　)			
신청내용	모계좌(이체지정계좌) 계좌번호				

■ 유의사항

1. 목돈을 불리는 통장은 최초 개설 시 반드시 모계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때 모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2. 목돈을 불리는 통장 내 신규되는 자계좌는 정기예금, 고단위플러스정기예금, CD연동정기예금, 369정기예금, MMDA형정기예금, 리틀빅정기예금, 지수플러스정기예금, RP, 기업어음, 표지어음만 신규가 가능합니다.
3. 자계좌의 만기가 도래한 때에 가입자로부터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 은행은 만기해지 원리금을 모계좌(이체지정계좌)로 입금처리하며, 중도해지 시에도 중도해지 원리금을 모계좌(이체지정계좌)로 입금처리 합니다..
4. 모계좌(이체지정계좌)로 입금 처리시에는 별도의 해지청구서 없이 은행의 계좌이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자계자의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이체처리 됩니다.
5. 자계좌의 해지원리금이 모계좌(이체지정계좌)로 자동이체 입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계좌의 일반전환을 가입자 본인이 즉시 거래영업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6. 모계좌(이체지정계좌) 잔액 범위에서 자계자를 신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서 및 거래신청서 없이 은행이 모계좌에서 연동으로 인출하여 처리 합니다.

※ 본인은 상기의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상기와 같이 목돈을 불리는 통장의 모계좌를 지정할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또는 서명)

5-08-0319 (210×297) (2013. 7. 제정)
(보존년한 : 약정 해지일로부터 5년)

하나은행

실명증표

■ 제신고사항

일자	내용	검인	일자	내용	검인

■ 인감(서명) 변경

일자							
변경인감							

5-08-0319 (210×297) (2013. 7. 제정)
(보존년한 : 약정 해지일로부터 5년)

하나은행